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연월일	20 . . . (제 회)	

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
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○○○ (고용노동부장관)
제출연월일	20 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건강관리카드 발급자에 대한 이력관리, 건강진단 안내 등을 위하여 건강관리카드 발급자의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사무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, 2025년 하반기부터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른 타워크레인 설치·해체기능사 자격 검정이 시행됨에 따라 타워크레인 설치·해체업의 인력 기준에 해당 자격을 가진 사람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4. 11. 22. ~ 2025. 1. 1.) 결과, 특기할 사항

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대통령령 제 호

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7조제4호 중 “발급”을 “발급 및 운영”으로 한다.

별표 15 제1호 인력기준의 안전 분야란 가목 중 “기계·화공·전기”를 “기계안전·화공안전·전기안전”으로 하고, 같은 란 나목 중 “건설안전 지도사”를 “건설안전 분야의 산업안전지도사”로 한다.

별표 16의 번호 2의 인력기준란 제1호 중 “기계·화공·전기안전”을 “기계안전·화공안전·전기안전”으로 한다.

별표 22 제1호가목 중 “판금제관기능사 또는 비계기능사의”를 “타워크레인 설치·해체기능사”로 하고,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라.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른 판금제관기능사 또는 비계기능사 자격을 가진 사람(2025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자격을 취득한 자로 한정한다)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5. ~ 10. (생략)	5. ~ 10. (현행과 같음)
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

[illegible]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	
연 락 처	(044) 202 - 8997